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148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(2008년 12월 15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김정숙)

가. 제안이유

-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부천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 하고,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 하도록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은 시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 하며,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함.(안 제2조)
- 기금은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,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 단체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사용함.(안 제3조)

-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, 세입·세출예산 외로 관리하며,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총괄기금 관리관에게 예탁함.(안 제4조)
-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,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함.(안 제5조)
-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.(안 제6조)
-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, 분임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을 지정함.(안 제7조)
-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르며, 이외의 사항은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함.(안 제8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개별 기금위원회가 그 기능이 서로 다른데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하면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?	○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5명으로 늘려 심의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. (사회복지과장)
○ 개별기금 심의기능이 소홀히 될 우려가 있는데 보훈기금심의위원회에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유사한 위원회는 없 는가?	○ 유사한 위원회가 없음. (사회복지과장)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서로 다른 개별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기금사업에 대한 심의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된 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.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보훈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부천시의 출연금
 - 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 - 3. 그 밖의 수익금 등
 -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.
- 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 - 1.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
 - 2.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업
 - 3. 보훈 및 복지향상 등에 관한 사업
 - 4.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 · 운영에 필요한 사업
 -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- 제4조(기금의 운용・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, 「지방재정법」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・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.
 - ② 기금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
- 제5조(기금의 심의)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통합 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 - 1.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 제6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기금의 조성계획
 - 2. 기금의 사용계획
 - 3. 기금의 운용방법
 - 4.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
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 - 1. 기금운용관: 보훈업무담당국장
 - 2. 분임기금운용관: 보훈업무담당과장
 - 3. 기금출납원: 보훈업무담당
 -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8조(준용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.
-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기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·집행된 보훈기금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·집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호	제347호
의 결	2008. 12. 22.
년월일	(제148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1.1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부천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 하도록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은 시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 하며,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함.(안 제2조)
- 나. 기금은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,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 단체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사용함.(안 제3조)
- 다.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, 세입·세출예산 외로 관리하며,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함.(안 제4조)
- 라.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,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 우용위원회에서 심의함.(안 제5조)

- 마.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.(안 제6조)
- 바.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, 분임기금운용 관 및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을 지정함.(안 제7조)
- 사.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르며, 이외의 사항은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함.(안 제8조)
- □ 첨 부: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

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보훈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부천시의 출연금
 - 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 - 3. 그 밖의 수익금 등
 -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.
- 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 - 1.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
 - 2.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업
 - 3. 보훈 및 복지향상 등에 관한 사업
 - 4.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 · 운영에 필요한 사업
 -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- 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, 「지방재정법」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.
 - ② 기금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
- 제5조(기금의 심의)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 - 1.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 제6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기금의 조성계획
 - 2. 기금의 사용계획
 - 3. 기금의 운용방법
 - 4.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
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 - 1. 기금운용관: 보훈업무담당국장
 - 2. 분임기금운용관: 보훈업무담당과장
 - 3. 기금출납원: 보훈업무담당
 -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8조(준용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.
-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기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·집행된 보훈기금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·집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

제정 2003. 01. 15 조례 제1910호

개정 2005. 11. 11 조례 제2122호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복지향상 및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 기금을 조성하고, 이를 효율적인 운용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1. 시의 출연금
- 2. 기금의 운용 수익금
- 3. 기타 수익금 등
- ②기금은 2006년까지 총10억원을 조성하며, 출연금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제3조 (기금의 사용) ①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- 1. 보훈단체의 육성지원 사업
- 2.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
- 3. 보훈 복지향상등에 관한 사업
- 4. 기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
-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.
- 제4조 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,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보훈기금운용심의 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한다.
 -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, 보훈단체 대표자,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·위촉한다.
 -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 - ⑤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,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
- 제6조 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-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7조 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제8조 (위원회의 회의)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,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 -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9조 (기금운용계획)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- 1.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
- 2.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
- 3.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10조 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·관리하되 「지방재정법」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.
 - ②기금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. <개정 2005.11.11>
 - ③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훈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하되지출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.
- 제11조 (결산 및 보고)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2조 (기금관리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
 - 1. 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
 - 2. 분임운용관 :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
 - 3. 지출원 :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
 -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3조 (회계관리)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4조 (위원의 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5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(2003.01.15 조례 제191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(2005.11.11 조례 제2122호)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"를 "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"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기금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.

제10조제1항중 "지방재정법"을 "「지방재정법」"으로 하고, 제13조 중 "부천시재무회계규칙"을 "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"으로 하며, 제14조중 "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"를 "「부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"로 한다.

⑤부터 ⑯까지 생략